

충청북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육미선 의원 등 8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0년 8월 26일
-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8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,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 범위(안 제3조)
-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대한 도지사 등의 책무(안 제4조)
-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(안 제6조)
-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실태조사 실시(안 제7조)
-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(안 제8조)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(안 제9조)
-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(안 제10조)

-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(안 제11조 및 제12조)
-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(안 제16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,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, 직장, 직원에 대한 정의를,
 -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도지사의 책무를,
 - 안 제6조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의 수립·시행 사항을,
 -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와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,
 -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예방교육 및 행위발생시 조치 사항을
 -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,
 - 안 제16조에서는 피해자 및 신고자의 비밀유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 조례안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직원간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. 끝.